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4. 3.

기 획 재 정 부

목 차

제1편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2
1. 법적근거	2
2. 운영절차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적	4
1. 조세지출 현황	4
2.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적	7
Ⅲ.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Ⅳ. 조세지출성과관리 시행계획	13
제2편 2024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7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8
1. 의 의	18
2. 조세지출 건의서	18
3. 조세지출 평가서	19
Ⅱ. 2024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20

제1편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I.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조세지출 기본계획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
 - (조세지출 성과제고, 조특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규정 (참고1)
 - (국세감면한도, 국가재정법 제88조)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 규정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 (기본계획 수립·통보) 기획재정부장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31.까지 각 부처에 통보
- (건의서·평가서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매년 4.30.까지 기획재정부장에 제출
 - (건의서) 조세감면의 신설·확대가 필요한 경우, 정책목적·정책 효과·연도별 세수효과·세출예산 중복여부 및 세수보완방안을 포함한 조세지출 건의서 제출
 - (평가서) 일몰도래 조세특례 등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분석,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참고1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 ①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 평가
 - 각 부처는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② **(의무심층평가)**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 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③ **(임의심층평가)**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

< 임의심층평가 대상 >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항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부처자율평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제도 운용 실적

1 23년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24년 조세지출예산서(23.8월)에 따른 '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 전망

- 국세감면액은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증가*하나 국세 수입총액 감소(△53.9조원)로 국세감면율 상승 예상

* 국세감면액 증가율(%): (18)10.8 (19)12.8 (20)6.7 (21)7.7 (22)11.4 (5년 평균)9.6

※ 국세감면액과 지방소비세 이체분은 현재 미확정이며, 24.8월 2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확정치와 국세감면율 확정치 발표 예정

(단위: 조원, %)

구 분	'22년(실적)	'23년(전망)	'24년(전망)
■ 국세감면액(A)	63.5	69.5	77.1
■ 국세수입총액(B)*	422.9	369.1	394.9
■ 국세감면율[A/(A+B)]	13.0	15.8	16.3
■ 국세감면한도**	14.6	14.3	14.6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 §88)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관리유형별 현황) 23년 감면액 중 조세특례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 비중은 15.4조원으로 약 22.1% 수준

※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을 제외한 국세감면액은 54.1조원, 국세감면율은 12.7% 수준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A)	63.5	100.0	69.5	100.0	77.1	100.0
- 구조적지출	13.6	21.4	15.4	22.1	16.1	20.9
- 잠재적 관리대상	19.8	31.2	20.7	29.8	22.2	28.8
- 적극적 관리대상	29.6	46.6	33.0	47.4	38.4	49.8
- 경과규정	0.5	0.7	0.4	0.6	0.5	0.6

*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

참고2

관리유형별 조세지출 항목 [23년 조세지출예산서]

< 구조적지출 항목 명세 >

[8개 항목]

조 항	내 용	성 격
소득세법 §12 3(너)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조세체계 이중과세 조정 또는 납세자의 비자발적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
소득세법 §51①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2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3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6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세법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9의2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다자녀)	
소득세법 §59의4①, §52①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명세 >

[40개 항목]

조 항	내 용
부가가치세법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소득세법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②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③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④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법인세법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관세법 §91 4,5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18①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31, 32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법 §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2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 항	내 용
조특법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44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58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5	기부장려금
조특법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특법 §100의2~13	근로장려금 지급
조특법 §100의27~31	자녀장려금 지급
조특법 §105①4	장애인용 보장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①5,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6①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3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9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특법 §106②22 등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106의2①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117①7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법 §121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운영결과)**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통해 조세 지출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1건)** 타당성 부족으로 제도 미도입
- **(심층평가, 23건)** 일몰종료 등에 대한 의무심층평가 10건,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 심층평가 13건
 - 의무심층평가 결과 1건 재설계, 9건 일몰 연장
 - 임의심층평가 결과 4건 재설계, 1건 일몰종료
- **(기타 조세지출 관리)** 부처 자체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를 달성한 조세지출 5건 일몰종료

□ **(집행관리)**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사전관리)**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타 면제된 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제출
 - 예타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6건*에 대하여 해당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국회 제출('23.11월)

※ **자체평가과제:** ①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상향, ②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③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④고액기분 세액공제 한시 상향, ⑤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소득공제액 한시 상향, ⑥개인택시용 간이과세제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 **(성과평가 개선)** 성과평가 연구 계획단계부터 자문위원들의 타당성 평가 의견 반영
 -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간평가 이전 예타·심층평가 연구진이 작성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피드백 실시

Ⅲ.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1.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회복 속도는 차별화

- 금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교역량 회복, 반도체 업황 호전 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예상

* '23→'24년 전망(%): (글로벌 교역<IMF>)0.4→3.3 (메모리 반도체 매출<WSTS>)△28.9→44.8

- 다만,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부담 누적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분절화 심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

- 한편, 인구 감소, 기후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지속

-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적·불공정 관행 등으로 생산성 제약 및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

2. [세입]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다, 불확실성 상존

- '24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중장기 국세수입 규모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될 것이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

- 한편 세계 각국은 제조업 생산기반 유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원**하고 저출생, 양극화, 국토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 필요

◇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지원과의 연계 강화, 중복지원 배제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용** 필요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정책
목표

- 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 ②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 ③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세지출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조
세
지
출

운
영
방
향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민생안정·사회이동성 제고 위한 세제지원 지속
-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

조세지원
합리성 제고

- 비과세·감면 정비 등 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조세지출의 정책효과성 제고
- 조세지원의 형평 제고

조세지출
관리
실효성 제고

- 적극적 관리대상 위주로 심층평가 수행
-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역할분담 강화
-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

1.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①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기술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
- 창업·벤처기업 및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절벽 완화

② 민생안정,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년·경단녀·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취약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지속

③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

- 유연한 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저출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2.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목표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통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방안,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
 - 제도 신설시에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
-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 (26개)는 효과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종료 여부 결정

② 조세지출의 정책효과성 제고

- 정책 목적에 따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억제
- 법제도의 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요건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불필요한 경우 정비

③ 조세지원의 형평 제고

-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 방지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율, 공제율 등 세제 지원은 폭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검토

3.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관리의 실효성 제고

① 적극적 관리대상 위주로 심층평가 제도 운용

-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과세·감면 제도별 관리대상 유형**(적극, 잠재, 구조) 재분류 추진*

* 원칙적으로 일몰도래시 재분류 대상에 포함하되, 일몰이 없는 제도는 3년간 나눠 재분류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일부 갖춘 항목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

-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가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되어 조세지출 관리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제 관리 가능한 비과세·감면제도 위주로 중점 관리

* 인적공제(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추가공제), 법정 사회보장료 공제(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등

②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방지, 역할분담 강화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재정지출 규모 현황 작성·공개

* 현행 16대 분야 분류 외에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하고 정부지출 통계를 통합 공개

- 고용 등 주요 분야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협업과제)

③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

- 조세특례에 대한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평가서 작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조세특례 담당자 대상 평가서 작성방법 교육 실시

-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을 통해 활용도 제고

IV.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시급성 등 평가대상 선정기준 (운용지침 §14)에 따라 조세지출 2건*에 대해 타당성 평가

*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 **(심층평가)** '24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14건에 대해 임의심층평가 실시

□ 성과평가 제도 효율적 운영 및 환류

- 예타·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를 분석하고, 유사·연관된 조세특례는 일괄평가하여 심층평가 효율성 제고
- 예타·심층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

□ 부처 제출 건의서 및 평가서 관리 강화

- **(건의서)** 건의서 작성 지침에 맞게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통계자료, 세수보완방안 등 충실한 작성 유도
 - 제도 도입에 따른 간접적 세수 효과만을 작성하는 등 직접적 재정절감 방안이 누락된 경우 추가 보완 요청
- **(평가서)** 평가서 확인·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차년도 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적 고려

'24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2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 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
심 층 평 가 (21건)	①*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등 R&D비용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기술별 공제율 차등적용하며 신성장·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4.12.31.까지)
	*(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②*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시설투자액의 일정비율 세액 공제 (기업규모별, 기술별 공제율 차등적용하며 국가전략 기술의 경우 '24.12.31.까지)
	*(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신성장·원천	
	③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4.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 50~100% 감면 (기업형태별, 지역별 공제율 차등)
	④*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4.12.31.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⑤*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4.12.31.까지 전기 자동차에 대해 1대당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임의)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4.12.31.까지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1대당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⑥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15~30% 세액공제 ('24.12.31.까지 3천만원 이상 고액기부금에 대해서 는 40% 세액공제)
	⑦통합고용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임의)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주도 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밖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등 면제

(임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목별 1~2만원, 전자고지 1건당 1천원)
(임의)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농·임·어업 종사자가 구매한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해 사후환급
(임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1년 내 경작 개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감면
(임의)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임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 30% 감면 (‘24.12.31.까지 중소제조업체 70%, 중견제조업체 50%)
(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연장하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과세특례
(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주식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현물출자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제휴법인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이연
※(임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5.12.31.까지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비수도권 읍·면은 면적 제한 없음)
※(임의)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노인복지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임의) 해운기업 톤세 제도	‘24.12.31.까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 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 허용

※ 특례 내용이 유사한 제도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

'24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금년도 평가 준비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2월 ~ 5월	심층평가 실시 (1월~)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1월~)	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25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6월 ~ 7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 '25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9월 ~ 12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25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0월)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 선정에 따른 '25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24년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제2편

2024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정책결정에 활용
 - (조세지출 건의서)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
 - (조세지출 평가서) 각 부처의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 평가 실시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세감면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 작성·제출
 -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 포함
 -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제출(8월 중)
- 새로운 조세감면 요청 시 감면액 보충을 위해 기존 감면액의 축소·폐지방안 등을 함께 제출은 법적의무(국가재정법 §88)

-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 대상
 - 제도 도입에 따른 간접적 세수증대 효과만 작성하는 경우 세수 보완방안 추가 작성 요청

※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4.30일)
 -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 여부(범위확대 포함) 등을 자율 평가
 - 소관 조세지출 중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
 - * '24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
 - ☞ 다수 부처가 관련된 조세지출은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
 - ※ 소관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 ☞ 부처 평가서 작성 시 소관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
 - * 기존 평가항목 외에 제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
 - 평가서 확인·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차년도 심층 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적 고려

Ⅱ. 24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① '24년말 일몰도래 28개* 항목

* 1개 항목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각 부처별로 중복 계산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29의8	③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조특	10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97의9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6				정비사업 설립인가 등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금융 위원회	조특	91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04의1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기획 재정부	조특	91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06	②	2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6	①	31		
	조특	118	①	23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28의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④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⑦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12의3,4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특	16의3,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특	19	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	29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특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환경부	조특	28의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④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⑦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양 수산부	조특	104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 일몰 없는 29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특칙 §12②의 직업훈련시설)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특칙 §12②의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특칙 §12②의 연구·시험 시설)
교육부	조특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에 위한 과세특례
	부가	27		3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4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6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국토 교통부	조특	106	①	4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21의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금융 위원회	조특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기획 재정부	조특	2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농림축산 식품부	조특	117	①	7,19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21의23	③⑥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보건 복지부	조특	105	①	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세	91		4,5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법인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소득	51	①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	51	①	2		장애인 추가공제
	상증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산림청	조특	69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117	①	7의3, 19의3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산업통상 자원부	조특	121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관세	95	①	3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벤처 기업부	조특	30의7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특례
해양 수산부	조특	117	①	7의2, 19의2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행정 안전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특칙 §12②의 안전시설)
	조특	5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부	조특	24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특칙 §12②의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3 '23년 부처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국토 교통부	조특	62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조특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85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조특	85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조특	97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농림축산 식품부	조특	7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보건 복지부	조특	106	①	4의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①	1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